

연천소방서 공무원(조리사) 채용 공고

연천소방서 공무원(조리사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5일

연천소방서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근무부서	직군/직종	담당업무	채용인원	비고
연천소방서 군남119안전센터	가-단시간 직군/조리사	조리업무 및 환경정리 등	1	

2. 채용기준 및 자격조건

- 응시결격사유 : 「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」 제10조 및 제67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응시연령
 - 조리사 : 만 18세 이상 ~ 만 60세 미만
 -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거주지 제한 :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 - ※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, 위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- 자격조건 및 우대조건

직종	자격조건	우대조건
조리사	-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*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[별표2] 중직무분야 “조리”의 자격 소지자* 조주기능사 제외	-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의 조리사 경력자 -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

- 우대조건
 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
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고령자·고령자 우선 고용
- 응시결격사유 :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,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※ 우대조건외의 경력 기준은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 경력

<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>

【제10조 결격사유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그 밖에 제1호부터 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【제67조 정년】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.

식품위생법 관련법령

【법 제40조(건강진단)】

-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.
-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.

【시행규칙 제49조(건강진단 대상자)】

-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. 다만,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【시행규칙 제50조(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)】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(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)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
3.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(화농성) 질환
4. 후천성면역결핍증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

3. 근무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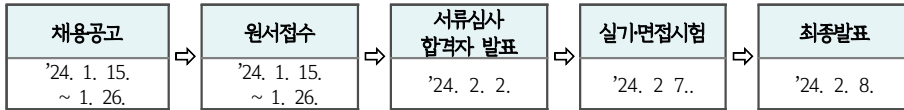
- 근무시작일 : 2024. 3. 1. **字 예정**
- 근무시간 및 보수

채용분야	근무장소	근무시간
가직군(단시간) / 조리사	연천소방서 군남119안전센터	휴게시간 제외 주 30시간(1일 6시간, 주 5일 근무) ※근무시간: 10:00~13:00, 16:00~19:00 / 휴게시간 : 13:00~16:00

- 보 수 : 「경기도 공무원직 직군별 봉급표」에 의함
- 연장근로: 1주 12시간 한도
- 기타사항 :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요일/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, 계약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, 근무장소 등은 변동될 수 있음

4. 시험일정

□ 채용절차 및 세부일정



채용절차	추진일정	장소	소요기간
채용공고	2024. 1. 15. ~ 1. 26.	홈페이지 (연천소방서, 연천군청 등)	12일
원서접수	2024. 1. 15. ~ 1. 26.	연천소방서	12일
1차 서류심사	2024. 2. 1.	연천소방서	1일
1차 서류 심사 합격자발표	2024. 2. 2.	개별연락	1일
2차 실가시험 및 면접시험	2024. 2. 7.	연천소방서 본서 식당 / 회의실	1일
최종합격자 발표	2024. 2. 8. 14:00	개별연락	1일
채용후보자 등록 (근로계약체결)	2024. 2. 13.~2. 15.	연천소방서	3일

○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기간 : 2024. 1. 15.(월) ~ 1. 31.(수) / 17일간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

- 방문 접수

* 접수시간: 0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* 접수처: 연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사무실

- 온라인접수 :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(<https://apply.jobaba.net>) 접수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경력증명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첨부,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 - ☞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가능하며 접수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(조리사 실가시험) 시 반드시 지참 하셔야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응시표 분실 시는 시험전형 전일18시 까지 연천소방서 채용담당자에게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6. 시험방법

가. 시험방법

- 1차 시험 : 서류심사 ☞ **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**

· 경력 및 고령자 가점사항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,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

경력(최대 30점) / 공통		(준)고령자 가점(최대 20점) / 공통	
경력 기간	배점	나 이	배점
10년 이상	30점	고령자	20점
8년 이상 ~ 10년 미만	25점		
6년 이상 ~ 8년 미만	20점	준고령자	10점
4년 이상 ~ 6년 미만	15점	해당 없음	0점
3년 이상 ~ 4년 미만	10점		
3년 미만	5점		
경력 없음	0점	· 준고령자(50세~55세 미만), 고령자(55세 이상)	

※ 1차 서류심사 등점자 결정방법 : 3배수 이내 등점자 전원 합격 처리

- 서류 심사항목

- ▶ 제출서류 종류(미비, 미첨부), 채용자격조건, 우대요건, 허위기재 및 위조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

※ **결격사유, 채용관련서류가 미비·미첨부 및 허위·위조로 확인될 경우 탈락**

※ **1차 시험(서류심사) 점수는 3배수 선발을 위한 점수 책정이며, 2차 실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 점수에 미반영**

○ 2차 시험 : 실기시험(70점)+면접시험(30점)

- 대 상 : 1차 서류심사 합격자
- 시험일시 및 장소 :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
- 평가방법(실기시험)
 - ▶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을 심사
 - ※ **평정요소(3개 항목) : ① 음식을 조리하는 태도 ② 청결 상태 ③ 음식의 맛**
 - ▶ 실기과목(음식) : 당일 공지 / 실기시간 : 30~60분
 - ▶ 절대평가 (위원별 채점 점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)
- 평가방법(면접시험)
 - ▶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, 평정요소*마다 평정
 - ※ **평정요소(3개 항목) :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·품행**
 - ▶ 절대평가(위원별 채점 점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)
 - * **위원의 과반수가 1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한 경우 탈락**
- 평가결과 : 미공개

○ 최종 합격자 결정

- 직종별 최종 합격자
 - ▶ 청소원, 사무보조원 : **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**으로 합격자 결정
 - ▶ 조 리 사 : **실기시험 점수 및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**하여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예비합격자 : 선발 예정인원의 1배 별도선발
 - ※ **면접합격자가 채용될 수 없을 때 추가 합격 처리**

※ **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**

- 1순위. 고령자(조리사, 청소원, 사무보조원)
- 2순위.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자(조리사, 청소원, 사무보조원)
- 3순위. 실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(조리사)
- 4순위.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많은 자

○ 최종합격자 발표

- 일 자 : 2024. 2. 7. 14:00
- 발표방법 : 경기도청 및 연천소방서 홈페이지 공고

나. 채용후보자 등록

○ 대 상 : 최종합격자

* **예비합격자는 제외, 예비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절차 진행**

○ 채용후보자 등록 전 재확인 사항

- 면허증 및 자격증의 유효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취소

7. 응시 제출서류

제출 서류	
공 통	1. 응시원서 <별지 1호> 2. 이력서 <별지 2호> 3. 자기소개서 <별지 3호> 4.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<별지 4호> 5.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<별지 5호> 6. 주민등록등본 1부(원본) 7. 주민등록초본(원본, 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) 1부 8. 조리사 면허(자격)증(사본) 각 1부
해당자	9. 경력(재직)증명서(원본) 1부. ※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⇨ ['붙임1' 제출서류 양식]에 있는 <별지 6호>경력증명서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 제출 / 별도 서식 불인정 10.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사본) 1부.
최종합격자	11.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(원본) 1부

가. 항목별 주의사항

○ 면허증 및 자격증

- 면허증 및 자격증 인정 기준일자 : **공고일 전일까지**
 - ※ 면허증 및 자격증은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(자격상실 등의 경우 합격취소)
-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(유효)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면허(자격)증 취득일 기준
- 폐지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면허증 및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

○ 경력 및 재직증명서

- 경력 인정 기준일자 : **공고일 전일까지**
-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**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만 인정(사본 제출 시 불인정)**
- <별지 6호> 경력증명서 서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작성
 - * 근무부서, 기간, 직급(직위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, 연락처 포함)
- 경력증빙자료 제출
 -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반드시 제출
 -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(<http://www.nhic.or.kr>) 발급
 - **폐업회사의 경우** <별지 7호>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함께 제출
 - *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「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」 추가 제출 -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○ 주민등록등본*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

-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전입일자가 확인 가능해야 함
- 부양가족(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 - ※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작계존속,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작계비속

※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 유의사항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**응시원서에 연락처(휴대전화번호 등)를 반드시 기재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- *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
-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**채용예정자 인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**합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채용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, 퇴사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**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(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)를 결정**할 수 있습니다.
- 개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초본, 법원판결문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. **(스테이플러 사용금지, 클립 활용)**
 - * 응시 제출서류(공통서류, 직종별 제출서류)는 **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연천소방서 홈페이지(알림마당-고시/공고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연천소방서 소방행정팀(031-830-02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제출서류 양식(별도첨부) 1부. 끝.